

수장품 관련 견학프로그램 보안 및 비밀유지, 유물 보상 서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번호앞자리 + 뒷자리 1번째)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취합된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시행 1주일(7일) 후 전면 폐기합니다.

1. 가방 및 소지품은 보관함에 두고 입실한다.
2. 내부 촬영이나 녹음은 불가하다.
3. 견학시 안내 직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4. 견학자의 귀책사유로 유물 및 시설의 손상·훼손·가치하락 등이 발생하였을 시,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예규 및 사내 규정에 따른 조치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관련규정]

※ 시설 : DDP 운영규정 제7장(행위제한 및 변상조치) 제2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의거함

※ 유물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행위의 제한), 제12조(변상조치),

소장품관리규정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제65조(준수사항), 제67조(변상)에 의거함

2020년 월 일

서약인 (인)



澗松美術文化財團

간송미술문화재단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국립중앙박물관 관계 법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7.7.31.>

1. 손상 소장품의 수리·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
3. 관계 공무원의 책임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7.31.>

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
2.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장)과 관계 학예연구 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필요시 전공 학예연구직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준수사항)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1.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35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6.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7.31.>

제67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소장품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변상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재물문서손괴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장 행위 제한 및 변상 조치

- 제2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DDP시설물 또는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이 임차 기간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DDP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